

#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과 獨立要件

—國立中央圖書館法 制定에 의 提言으로서—

李 喆 珍

目

- 一. 序
- 二. 國立中央圖書館의 必要性과 그機能
  - 1. 必 要 性
  - 2. 機 能(奉仕活動)
- 三. 國立中央圖書館이 獨立하여야 할 要  
件
  - 1. 豈算面의 獨立

次

- 2. 人事面의 獨立
- 四. 國立中央圖書館의 機構와 獨立의  
位置
  - 1. 機 構
  - 2. 館 長
  - 3. 獨立의 位置
- 五. 結 論

一. 序

오늘날 國民文化 向上을 為한 圖書館施設은 國家施策의 重要한 領域을 찾고 있다. 現在 先進諸國에서는 各種 圖書館法(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國會圖書館 또는 國立圖書館法等)이 制定되어 圖書館事業이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는 것이다.

圖書館制度가 가장 發達한 美國의 國會圖書館(Library of Congress)은 西紀1800年에 發足하였고 其後 美國國會는 同圖書館의 機能을 擴張하여 그機能에 對하여 는 豐富한 法律과 法令으로서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이다.

現在 美國會圖書館의 機能이나 奉仕面에 있어서는 國內의으로는 勿論 國外에

對하여서도 最大限의 奉仕를 展開하고 있으며 機構나 藏書量에 있어서도 6個局 50餘個部 그리고 2,500餘名의 職員과 1,200萬冊의 藏書를 所藏하고 있다.

또한 이 美國會圖書館의 本을 받은 日本國立國會圖書館도 同圖書館을 創設하기 위하여 美國圖書館 使節團을 招請하여 그 使節團으로 하여금 日本國立圖書館運營委員會에 隨時로 圖書館立法에 關한 參考資料와 審議資料를 提供하여 結局은 1948年2月에 公布된 日本國立圖書館法의 制定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現在 이 圖書館은 美國會圖書館과 같이 龐大한 機構를 가지고 活潑한 奉仕를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不過 15年밖에 經過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職

員數는 1,170名 藏書數는 約550萬冊에 達하고 33個의 分館 및 支部圖書館을 가지고 立法府는 勿論 行政府, 司法院 그리고 一般國民에게도 奉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날까지 圖書館法이 制定되어 있지 않아 圖書館界의 發展을 갖어 오지 못하게 한 根本的인 原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韓國圖書館協會에서는 過去(日政時)에 比하여 發展되기는 커녕 오히려 萎縮되어 가는 우리 나라 圖書館界의 實情에 痛感하고 現在에 이르기 까지 2,3次에 걸쳐 圖書館法案을 關係當局에 提出한바 있었으나 當局의 無關心과 圖書館에 對한 認識不足으로 其實現을 보지 하였던 것이다. 多幸히 現在 文敎部에서 草案한 圖書館法이 未久에 制定될 것이 期待되고 있다.

이法이 制定됨으로서 우리 나라 圖書館界가 發展을 갖어 올수 있는 基盤이 됨으로 館界에서는 많은 關心과 希望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既往에 圖書館法이 具體化되어 實現化되어 가고 있음으로 여기에서 取扱하고자 하는 것은 國立中央圖書館에 關한 問題이다. 即 國立中央圖書館의 必要性, 機能, 機構, 獨立要件, 獨立의 位置等에 關한 愚見을 吐露하여 將次 國立中央圖書館法 制定에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二. 國立中央圖書館의 必要性과 그機能(奉仕活動)

### 1. 必要性

將次 國立中央圖書館은 一國의 中央圖書館으로서

첫째 自國의 모든 出版物(一般圖書, 政

府刊行物, 其他 團體機關刊行物)을 總網羅하여 保存하는 國家書誌센타(National Bibliographical Center)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 國立圖書館이나 最高會議圖書館을 살펴 본다면 모든 文獻이 全部 莊集되어 있는 書誌센타가 되어 있지 않다. 具體的 事實을 드리 본다면 國立圖書館의 境遇은 文敎部出版課에서 一般圖書에 對한 登錄事務를 取扱하고 있고 이 出版登錄에 따르는 納本制(2部式?)가 實施되고 있다. 이 2部中에서 一部는 國立圖書館에 保管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漏落됨이 없이 完全하다고는 볼 수 없는 實情이다. 實際上 國立圖書館에 所藏되어 있지 않은 좋은 圖書資料가 市中書店이나 個人藏書中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最高會議圖書館의 境遇은 國內出版物(中高校教材는 例外)은 全部 購入하고 있으며 政府各機關의 모든 刊行物은 30部式 納本制가 實施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完全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一國의 中央圖書館으로서 完全을 期하고 있는 圖書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一國의 文化財가 總網羅된 書誌센타로서의 國立中央圖書館이 必要하게 되며 또한 國立中央圖書館法이 必要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出版物을 漏落없이 莊集保存하기 爲하여서는 반드시 出版物納本制가 法으로 措置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出版物國際交換業務의 統一과 迅速化

이 出版物國際交換事務는 出版物(一般圖書 및 政府刊行物)을 相互交換 및 寄贈함으로서 우리 나라 文化를 外國에 紹介

할수 있고 國際的 理解를 增進시키며 國內에서 購得기 어려운 外國의 資料 特히 政府刊行物 其他機關의 刊行物等을 迅速히入手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入手되는 圖書資料는 우리 나라 立法活動이나 政策決定 그리고 各部門에 걸쳐 좋은 參考資料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交換業務는 單只 出版物交換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國際的 文化交流의 重要性을 떠고 있는 것이다.

將次 國立中央圖書館은 出版物 納本制(法)가 實施되면 自動的으로 모든 出版物이 出版과 同時に 所定의 部數(法定의)가 納本함으로 이 交換業務는 積極的으로 活潑하게 展開하여야 할것은勿論이거니와 이러한 制度가 確立됨으로서 業務의 統一과 迅速을 期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의 둘째의 必要性은 國際文化交流의 Center로서 交換業務의 統一性과迅速性을 期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現在 國內各圖書館에서나 政府各機關에서 行하고 있는 刊行物交換 및 寄贈業務를 살펴 본다면 同一한 資料를 二重三重으로 行하고 있어 不必要하게 時間과 經費를 浪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交換業務의 統一性과迅速性을 期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例를 들면 行政政府의 어떠한 部에서 出版한 刊行物을 其部는 其部대로 國內外機關에 寄贈하고 最高會議圖書館은 最高會議圖書館대로 30部式 納本에 依하여 繼續寄贈(交換協定에 依據) 및 交換을 行하고 있어 같은 國家機關에서 二重三重의 不必要한 業務를 하고 事務의 簡素화 經費의 節約를 期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는 것이다.

셋째 國內各級圖書館에 對하여

將次 國立中央圖書館은 各級圖書館을 指揮監督하는 位置에 서서 強力한 行政權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一國의 中央圖書館으로서 各級圖書館에 對하여 運營管理 및 分類, 目錄等 技術的인 業務에 對하여서도 協助하고 助力하는 指導的인 位置에 있어야 하며 圖書館의 發展을 爲하여 外國圖書館의 運營, 管理, 施設 및 모든 奉仕面에 對한 資料 및 情報蒐集에도 積極的인 役割도 또한 要望되는 것이다.

넷째 業務의 統一과 能率化

將次 國立中央圖書館은 各級圖書館에서 行하고 있는 業務에 對하여 統一化와 能率化를 計劃하고 또 指導 할수 있어야 한다. 圖書館業務中 圖書整理業務(分類目錄)은 어느 圖書館에서나 같은 整理過程을 밟고 있는 것임으로 納本을 받는 國立中央圖書館에서 權威있고 正確한 分類, 目錄을 行하여 印刷카드(Printed Card)를 普及하게 하면 統一과 能率化를 期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業務의 統一과 能率을 期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 (1) 圖書分類表의 統一化

### (2) 目錄作成의 同一體系化

### (3) 印刷카드의 普及

### 2. 機能(奉仕活動)

將次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으로서는 첫째 國政의 中心機關인 立法府에 對하여 立法活動과 政策樹立에 必要로 하는 모든 資料를 蒐集하여 議員 및 關係職員의 業務遂行에 實質的 資料와 情報를 提供하여 研究와 調査를 도움는데 第1義의

優位를 찾이 하여야 한다.

둘째 國立中央圖書館은 立法府에 限한  
奉仕에서 그쳐서는 아니되고 國家行政을  
擔當하고 있는 行政府나 法務部를 擔當하고  
있는 司法府에 對하여서도 文獻的 調查 및  
參考資料等 모든 情報를 提供하여야 할뿐  
아니라 地方官署 文化機關 教育機關 學術  
團體 言論機關 勞動團體 其他 各機關에  
對하여서도 奉仕하여야 할것이다.

셋째 一般國民에게 公開하여 教育, 情  
報, 美的鑑賞, 調查研究, 娛樂等을 갖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넷째 將次 國立中央圖書館은 支部圖書  
館과 行政各府에 分館制度를 두어 支部圖  
書館이나 分館을 通한 奉仕를 活潑하게  
展開하여야 할것이며 業務(分類, 目錄, 資  
料蒐集, 分配等)도 中央集中的으로 行함  
으로서 人的, 財政의 및 時間의 節約과  
業務의 能率化를 期하기 為한 制度도 樹  
立하여야 할것이다.

다섯째 出版物國際交換業務를 通하여  
圖書館P.R.은 積極적으로 展開하여야 한  
다.

여섯째 將次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書  
誌業務로서 國內 出版物 綜合目錄도 出版  
하여 圖書資料 利用의 便宜를 圖謀하여야  
할것이다.

以上은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으로서  
몇 가지를 드렸으나 以外에도 많은 機能을  
갖고 있는 것이다.

### 三. 國立中央圖書館이 獨立하여야 할 要件

前述한 바와 같이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고 圖書館 發展을 為  
하여서는 어찌한 部에 屬해 있어서는 안

되고 獨立되어야 한다. 그 理由로서

#### 1.豫算面의 獨立

모든 事業이豫算의 뒷받침 없이는 아  
모리 좋은 政策이나 事業計劃이 있다 하  
더라도 그 事業은 이루워질수 없다. 또  
한豫算이 있더라도 그 使用의 裁量權이  
直接自己機關에서 使用할 수 없고 上部  
機關이나 또는 다른 關係部局에 依賴하여  
그 使用을 要請하게 되면 業務의迅速性  
을 期할수 없고 따라서 機能을 제대로 發  
揮하기가 困難하다.

國立中央圖書館이 獨立된 機構가 아니  
고 어찌한 部에 屬해 있다고 하면 우리  
나라와 같이 圖書館에 對한 認識이 不足  
한 實情에 있어서는豫算獲得하기가 困難  
할뿐만 아니라 策定된 小額의豫算이나마  
直接使用의 裁量權이 없고 複雜한 手續  
과 節次를 거쳐야 하고 이것을 通過시키  
려면 그 用途에 對한 說明과 理解를 시키  
느라고 많은 時間과 力勞가 따르게 된다.  
그리고 또 圖書館事業을 잘 理解와 認識  
도 없는豫算取扱 關係職員의 故意의, 感  
情의 또는 俗謂 없는固執等으로 圖書館  
事業에 圓滑을 期하기 어려운 傾向이 많  
어 支障을 招來하는 點으로 보아豫算面  
의 獨立은 가장 重要的 要件이 된다.

#### 2.人事面의 獨立(專門職 人的確保를 爲한)

圖書館業務는 一般事務와 같이 어떤 規  
定이나 形式에 따라 處理하는 事務와는  
달리 圖書館 運營의 技術的인 面과 奉仕  
面의 多樣性에 비추어 이 方面의 專門的  
인 教育을 받은 사람을 確保하지 않으면  
充分한 圖書館奉仕와 發展을 期하기 어려  
운 것이다.

現在 圖書館에 對한 一般人士의 認識이

不足하다고는 하지만 그實은 圖書館職員의 質的問題, 地域社會와의 接觸의 不足, 치나친 圖書館資料 保存에 對한 意識, 奉仕方法의 貧困性, 實務能力과 教養의 不足, 圖書館職員의 後進性等 이하한 缺陷이 一般人으로 하여금 圖書館에 對한 認識을 갖지 못하게 한 原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缺陷을 是正하고 圖書館의 現代化 方策을 세우려면 人事面의 獨立, 即人事權(國立中央圖書館에서 執務할 職員에 對한)이 國立中央圖書館長에게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圖書館職員任命에 對하여서는 각 圖書館마다 職員採用에 있어서 圖書館教育을 받은 사람을 絶對要求하고 또 그렇게採用해 주기를任命權者에게 要請하고 있으나 實은 그렇지 못한 實情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公務員制度에 있어서 아직도 職階制나 職業公務員制度가 確立되어 있지 않은點도 있고 圖書館專門教育을 받은 사람이 적은 헛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도 圖書館職員에 對한 資格이나 業務의 重要性을 認定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까지 圖書館職員을任命 또는 採用한例를 본다면 圖書館에 關하여는 아무런 知識도 갖지 않은 者로 하여금 上級職에 앉쳐 놓는다든지 잘못없는 사람을 配置한다 든지 하는 境遇가 許多한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關係로 圖書館에 對하여 專門의인 知識을 가지고 있는 下級職員이 圖書館發展의 좋은 提案을 하더라도 理解를 하지 못하여 잘反映이 되지 않을 境遇가 많고 설사反映된다 할지라도前述한바豫算上의 獨立이 되어 있지 않아 使用의 不便(手續節次 時間의 遲延等)이 많아 適期措置가 어려운 形便임으로 自然 職員들의 職務에 對한 慮懲과 士氣는 振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低下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職權으로나 權力 또는 情實의인 職員採用을 止揚하기 為하여서는 上下級職을 莫論하고 圖書館教育을 받은 사람을 採用할 수 있는 人事面의 獨立이 되어야 한다.

以上 言及한豫算面의 獨立과 人事面의 獨立이 되면 圖書館의 運營政策樹立과 그 實行도 自然 獨立性을 갖게 되어 圖書館奉仕는 活潑히 進行될 것이다.

#### 四. 國立中央圖書館의 機構와 獨立의 位置

圖書館의 組織은 어디까지나 機能과 目的에 따라 組織되고 運營되어야 함은勿論이다. 따라서 將次 國立中央圖書館의 組織은 그機能의 分析에 基礎하여 理想의 으로 定하는 것은 重要한 일이며 必要한 部署와 專門의 人的 確保는 圖書館奉仕를 効率적으로 遂行하는데 가장 根本의인 要件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前述한 要件에 따라 獨立機構를 갖어야 한다. 一部 圖書館關係者들은 獨立되는 것은 絶對贊成이나 現政府機構로서나豫算上으로 不可能하다고 意見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點은 別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獨立된다고 해서 크게 政府機構가 變動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機構가 直時로 大規模로 擴張되는 것으로 生覺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豫算의 拘碍를 받아 實施不可能한 點도 거이 없다고 生覺된다.

##### 1. 機構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機構가 一時에 擴張할 必要가 없고 다만 業務量 業務性質 緊要性에 따라 部局은 年次의 으로 또는 必要時에 擴張할 수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納本制가 實施되면 國內出版物이 全部 納本權으로 이 納本登錄에 對한 業務는 大量 增加될 것이豫想된다. 이 러한 部課의 增設은 不得已 必要하게 되고 또한 収書量의 增加에 따라서 國際交換業務 整理業務(分類, 目錄)도 人的 增員이 要求되는 것이다. 그러나 他部署는 年次의 으로 또 施設이 擴張되는 대로 部課의 增設이나 增員을 하면 되는 것이다.

### 2. 館長(地位)

將次 國立中央圖書館이 獨立함에 있어서 館長의 地位를 높이여 一級公務員 以上으로 하여(美國과 日本에서는 長官級임) 圖書館界는 勿論 社會의 으로나 教育界로나 有能하고 政治 政黨과의 關係를 갖지 않는 人士로 하여금 任하게 함이 切實이 要望된다. 이러한 點도 現實情으로 보아 不可能하다고는 生覺되지 않는다.

### 3. 獨立의 位置

將次 國立中央圖書館이 獨立機構로 브境遇에 그 位置는 行政府의 한 機構로서 獨立하여야 할것이냐立法府에 屬하는 機構로서 獨立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지 않을수 없다. 다시 말해서 館長을 大統領이 任命하느냐 國會議長이 任命하느냐 하는 區分으로서 그 獨立의 位置가 定해지는 것이다.

그리면 이제 어디에 屬하여 獨立하는 것이合理的이고 妥當한가를 比較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國立中央圖書館의 必要性으로서 國家書誌의 센타가 되어야 하고 그 機能

으로서는 立法府의 立法活動에 對한 奉仕를 하여야 함이 마땅 하다고 生覺됨으로 行政府에 獨立하는 것 보다는 國政의 中心機關인 立法府에 獨立되는 것이合理的이고 妥當하다고 生覺된다.

둘째로 圖書館政策樹立이나 그 運營이 容易하다는 點을 들수 있다. 立法을 하는 國會議員들이 直接 間接으로 資料利用 및 情報蒐集을 圖書館에 依하여야 함으로 많은 關心과 依支를 하게 되어 圖書館에 對한 認識이 높아 지게 되며 따라서 一般的으로 奉仕를 通한 圖書館事業이 社會의 으로 열마나 重要한 位置를 찾이하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게 되어 圖書館政策樹立과 運營上 有利한 條件에 놓이게 될 것이다.

셋째로 立法府에 獨立함으로서豫算獲得의 容易한 點을 들수 있다.

이와 같이 考察한바에 依하여 立法府, 行政府, 司法院 그리고 一般國民에게도 奉仕하여야 할 國立中央圖書館의 獨立位置는 結局 國政의 中心機關인 立法府에 屬하여 獨立되는 것이合理的이고 妥當하다는 結論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例는 美國, 日本等 各國의 國會 圖書館制度에서 찾어 볼수 있는 것이다.

## 五. 結論

國民文化 向上을 為한 圖書館 施設이 貧弱한 우리 나라 圖書館界의 實情을 直視하고 圖書館의 健全한 育成을 圖謀하기 為하여 今般 文敎部에서 圖書館法(案)을 내놓은 것은 極히 多幸한 일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 이와 같이 圖書館發展을 為한 制度的 規制는 重要한 文敎施策으로써 文敎部의 立法趣旨나 그 精神에 對하여 館

界는勿論一般國民이 다 같이贊同하고  
앞으로 많은期待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圖書館은 온國民이 다 같이自由로 하  
利用하여 読書, 娛樂, 研究 및 調査를 할  
수 있는 것이 本然의 使命임으로 圖書館  
法은 圖書館과 國民에게 다 같이 利益이  
되도록 制定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取扱한 것은 題目에서  
明示된 바와 같이 國立中央圖書館은 獨立  
機構로써立法化 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  
力히 主張한 것이다.

그러나 文教部 圖書館法(案) 第4條I項  
을 보면 「國立中央圖書館은 文教部長官의  
指揮命令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

은 上述한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과 모든

要件으로 보아妥當하지 않음으로 國立中  
央圖書館에 關한限立法에 앞서 그組織  
과 機能을 分析檢討하고 어찌한 圖書館을  
어떻게 改編 또는 統合함으로써豫算面과  
人的面의 節約 그리고 能率的으로 奉仕를  
遂行할 수 있는가를 慎重히 考慮하여야  
할것이다.

그러기 爲하여서는 現國立圖書館과 最  
高會議圖書館의 모든 實情을 綜合檢討하  
고 圖書館界와 關係當局 또는 一般人士의  
意見을 聽取한 다음 國立中央圖書館法을  
別途로 定하는 것이 此機會가 適期라고  
生覺되어 意見을 陳述하여 立法에 資하고  
져 하는 것이다.

(筆者 最高會議 圖書館 圖書課長)

## 個人會員에게 알리는 말씀

圖書館法의 制定公布를 目捷에 두고  
本會는 個人會員들의 [現況과 그動態]  
를 모르고 있어 今般事務局은 第4次 理  
事會(1962. 6. 22. 於 事務局)의 委任을  
받아 앞으로 法制定에 따라 資格規準  
令(假稱) 草案作成에 資코자 다음과 같  
은 要領으로 會員登錄을 實施하게 되  
었으니 이點 諒知하시와 萬遺憾 없으사  
기 바랍니다.

**對象:** 圖書館 또는 讀書施設에 勤  
務하는 분으로서 會員이 되고자 希  
望하는 者。

**申請期間:** 自 1962年 7月10日—7月  
31日限

**方法:** 本會의 個人會員 加入 申請  
書樣式에 記入하여 62年度會費 壹  
百원과 함께 拂入한다.

**参考:** 郵送 하시는 분은 本會振替  
口座 <서울號 3753>를 利用하시  
기 바랍니다.

**個人會員이 되면:** ① 本會定款 第15

條에 依한 總會의 構成員이 되고 發  
言權 및 表決權을 가진다.

② 「도협월보」를 每月 無料로 郵送  
받는다.

③ 本協會에서 出版하는 刊行物價  
格을 割引 받는다.

④ 本協會가 主催하는 實務講習會  
에 受講優先權을 준다.

⑤ 本協會長 名義로 會員證을 發給  
한다.

⑥ 新規 加入會員으로서 「도협월  
보」의 今年度 既刊號를 要清하면  
郵送 받을 수 있다.

期限內에 申請치 않는 분에게는 意思  
없는 것으로 看做하겠습니다.

1962年 度會費를 納入하신 분은 再次  
申請하지 않아도 됩니다.

追白, 入會申請書는 「도협월보」에 插  
入된 用紙를 使用하시든지 同樣式規格  
대로 自製하여 申請하면 됩니다.

(事務局)